

의안번호	2220051
의 퇴 인	손솔의원
회 답 일	2026.8.14.
추계번호	26D36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5조의12 (수사인권보호관)	- 각 수사기관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절절차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인권보호관을 둠 - 수사인권보호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245의13 (수사심의위원회)	-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둠 -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3	안 제260조 (재정신청)	재정신청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정신청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262조의5 (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296조의3제1항(양형 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해자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96조의3제2항(양형 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사망, 중상해,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7	안 제337조의2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를 개시한 날,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이후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337조의3제3항(피해자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5조의12 (수사인권보호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45의13 (수사심의위원회)	
3	안 제260조 (재정신청)	
4	안 제262조의5 (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변호사 의 지정)	
5	안 제296조의3제 1항(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6	안 제296조의3제 2항(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7	안 제337조의2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8	안 제337조의3제 3항(피해자 등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	

2. 상세 사유

□ 수사인권보호관(안 제245조의1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참고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음¹⁾
 - － 군인권보호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겸직하고 있고 임기는 3년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임기 및 직위 등을 예측할 수 없고 군인권보호관과 개정안에 따른 수사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 업무량 등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수사심의위원회(안 제245조의13 신설)

- 개정안에 따라 각 수사기관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 참고로, 2026년 기준 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20만원²⁾, 안전검토수당은 각 기관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위원회의 경우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³⁾에서 1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1) 2026년 예산 기준 ‘군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으로 4억 8,800만원 편성

2)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 개최 주기, 연간 심의 건수 등 조직 및 운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각 수사기관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설치 대상 기관의 수를 확정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재정신청(안 제260조)

- 개정안에 따라 재정신청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정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경우 국선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소요비용이 증가하는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국선변호사에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수당은 지급받지 않는 반면, 일반 국선변호사의 경우 활동 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 법무부 2026년 예산안 기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당을 1건당 25만 8천원으로, 국선전담변호사 인건비로 총 50명에 대하여 49억 9,699만원으로 편성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재정신청 건수, 재정신청인의 국선변호사 신청 건수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공소제기 결정과 공소유지 변호사의 지정(안 제262조의5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때에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정할 경우 지정변호사의 보수 또는 수당 지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지정변호사의 자격, 지정 절차, 보수 및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0년~2024년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인원 수는 다음과 같음

[표 1] 연도별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 결정인원: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인원	28,883	17,295	14,486	21,139	25,353
결정인원	167	116	86	121	124

자료: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 수사진행상황의 통지(안 제337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수사를 개시한 날,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이후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수사 기간에 따라 통지 건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개정안은 피해자등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통지 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피해자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안 제337조의3제3항)

-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때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열람 또는 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안 제296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해자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망, 중상해, 성폭력범죄,

-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업무량 증가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여비나 특정 업무경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조사 대상 수, 필요한 증원 규모나 업무경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2026년도 예산으로 조사활동 등을 포함한 보호관찰활동 사업에 176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2024년 조사업무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2] 조사업무 실적: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판결전조사	1,596	1,618	1,273	1,431	1,373
법원결정전조사	17,813	18,096	18,570	18,039	16,608
검사결정전조사	909	932	527	1,194	682
청구전조사	1,493	1,344	1,490	1,513	1,182
환경조사	1,365	1,185	1,117	1,511	1,858
합 계	23,176	23,175	22,977	23,688	21,703

자료: 법무부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박은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은비	02-6788-4831	ebpark@nabo.go.kr